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부과대상물품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것.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제외.
- 품목번호 : 제3920.92-0000호

3. 시행일 및 적용기간

- 적용기간 : 규칙 공포일로부터 5년간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 적용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 2022년 9월 14일 이후 잠정조치 된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

4.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4.90~28.60% 부과

II.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저우패킹(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창저우필름(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다. 충칭밍주(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라. 창저우플라스틱(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마. 동홍신소재(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	4.94
	2.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효성 화학주식회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90
	3. 그 밖의 공급자	4.94
태국	4.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61
	5. 그 밖의 공급자	24.61
인도네시아	6. 코롱이나(PT. KOLON IN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8.60
	7. 그 밖의 공급자	28.60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III.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1월 31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2. 의견서 제출처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tajr21@korea.kr
- 전화 : 044-215-4432
- 팩스 : 044-215-8076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게시용)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강민아 컨설턴트
T 070-4353-1555
E maka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